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77호)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84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98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2
III. 주요내용	5
IV. 검토의견	10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	10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21
3.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정의	24
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26
나. 분산원장의 정의	31
4.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34
5.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41
6. 상환의무 및 준비자산	49
가. 상환의무	49
나. 준비자산	54
다. 예금보험공사의 상환자금 지원	62
7. 거래지원	66
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66
나.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71
8. 감독·조치 권한 및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	77
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권한 부여	77
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86

I. 제안경위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가.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7. 28.

다. 회 부 일 : 2025. 7. 29.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가. 제 안 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7. 28.

다. 회 부 일 : 2025. 7. 29.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가.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8. 21.

다. 회 부 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외환시장 및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과정에서의 지급결제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위협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은 이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상환 의무, 이자지급 금지, 정보공시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체계를 구축한 상황임. 미국(GINIUS Act), 유럽연합(MiCA), 일본(자금결제법), 홍콩(스테이블코인법)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감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결제, 송금, 투자 등 다

양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발행인의 준비금 보관, 상환 의무, 정보공시,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등 세부 규율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 발행 자산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관리 의무, 발행·상환 절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하려 함.

Ⅲ. 주요내용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시 백서 및 상품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백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사항과 상환을 위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의무, 분산원장등의 취약점 분석·평가, 금융위원회의 보고 등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0조).

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운영 실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바.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

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감독 및 처분과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 및 관련 기본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의 유지의무 및 인가의 취소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상품설명서 작성·공시의무, 준비자산의 안전한 관리의무 및 이자 지급 금지 의무, 상환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관리 의무, 안전성확보의무, 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보험가입,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그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 조사권한,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처분 및 그 외 건전 경영, 운영실패 시 처리 등 관련 조치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

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운영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자.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긴급조치명령 요청,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 원장예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업의 범위,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신청 절차 및 효력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인가 취소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인가 제도의 근간을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전 발행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신고의 효력발생, 정정신고, 설명서 공시 등 발행 절차를 규정하고,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요건으로 분산원장의 관리, 발행 준거 통화의 액면 표시, 발행사실 통보 등 발행 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마. 발행인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바. 준비자산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발행 현황 공시, 거래 내역 확인, 안전성 확보 등 발행업자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명시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 및 가상자산시장 운영자에 대한 거래지원 관련 조치 권한을 부여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아. 발행인의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양벌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가상자산 거래 수단으로 성장해온 스테이블코인이 최근에는 지급 결제수단으로서의 잠재력과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이란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과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추구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을 의미함.

○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가치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 편의성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내에서 중요한 거래 수단으로 정착해왔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존 화폐를 대체¹⁾하여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도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 거래에서도 기존 결제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²⁾가 늘어나고 있음³⁾.

□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⁴⁾을 살펴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총액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USDT 및

1) 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화폐가치가 불안한 일부 신흥국 중심

2) Visa 및 Mastercard는 금년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 및 인프라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하고 있다. 또한 홍콩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RedotPay는 최근 테더,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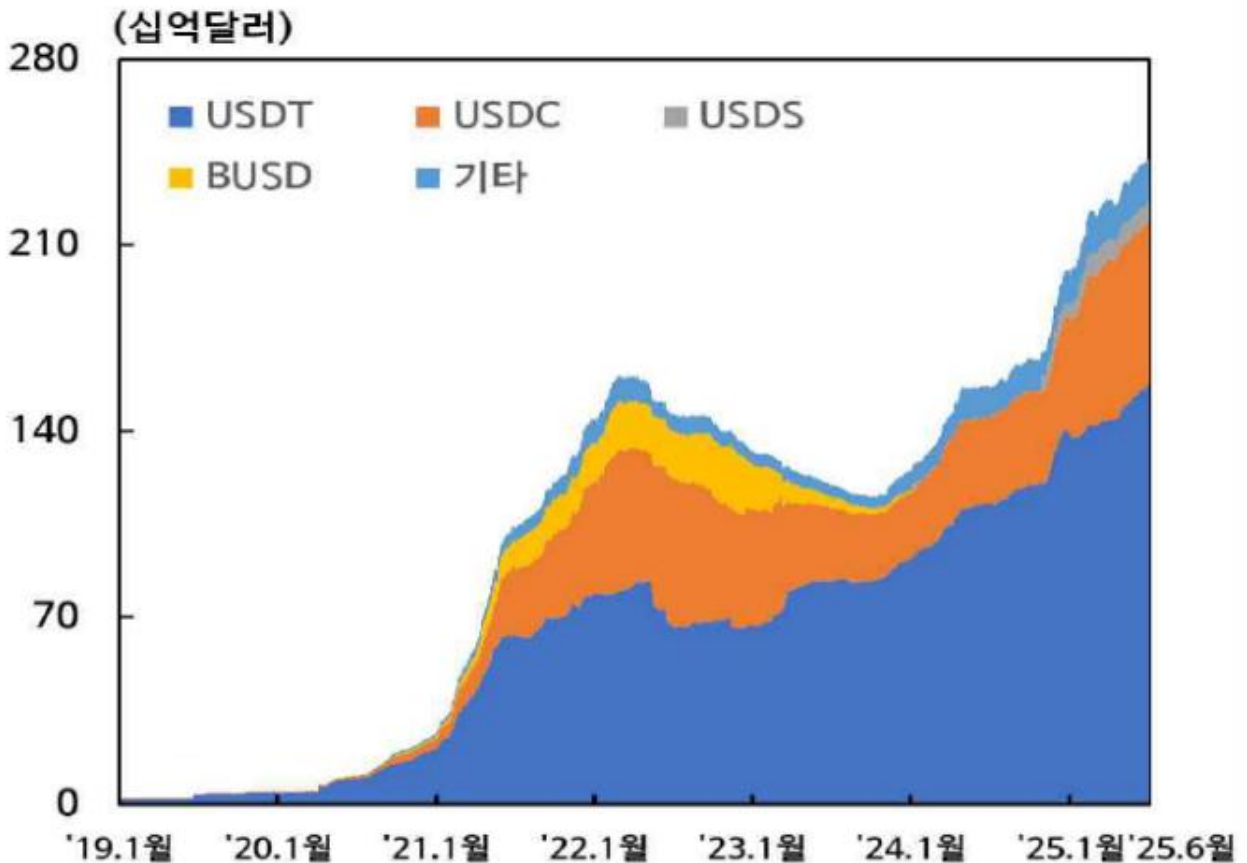
3) 이상의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 6.’ 참조

4) 이하의 내용은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 10.’ 참조

USDC가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25년 6월말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약 2,529억 달러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주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자료: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 10)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중 USDT 및 USDC⁵⁾의 시가총액은 각각 1,576억 달러(전체 대비 62.3%), 617억 달러(전체 대비

5) USDT 및 USDC 모두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하고 있음.

2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 비중은 2017년 7.9%에서 2025년 85.0%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USDT, USDC이며, 국내 투자자들은 주로 매수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여 해외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등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25년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800억원⁶⁾ 수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의 약 0.1% 수준이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금액은 약 7조원⁷⁾ 규모임.

○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원화를 이용한 거래 비중이 대부분(99.77%)을 차지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비중은 약 0.04%에 불과함.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 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은행 실명계좌를 연계하도록 규정⁸⁾함

6) USDT 5,571억원, USDC 207억원

7) USDT 6조 9,179억원(96.9%), USDC 2,206억원(3.1%)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따라 원화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의 편의성⁹⁾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그 결과 국내 투자자들은 매수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주로 해외 거래소로 이전¹⁰⁾하여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¹¹⁾ 등에 활용하고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¹²⁾.

○ 미국은 지난 2025년 7월,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 및 유통에 관한 포괄적 규율체계를 다룬 ‘지니어스법(GENIUS Act)¹³⁾’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화를 완료하였음.

- 지니어스법의 목적은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 규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9)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실명인증 계좌를 연계하도록 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을 제외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은행계좌 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10) 2025년 2분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출고된 규모는 14.9조원, 반대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입고된 규모는 12.7조원 수준임.

11)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 크라켄 등)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증거금으로 예치한 후 가상자산에 대한 선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2) 아래 해외 주요국 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 2025국정감사이슈분석 I, 2025. 9. 11.’ 참조

13)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제관할, 발행자와 준비자산 요건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연방 차원의 규제체계 확립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유럽연합(EU)은 2023년 6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규제법으로 평가받는 MiCA¹⁴⁾를 제정¹⁵⁾하였으며, 이 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Electronic Money Token; EMT)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6월 기존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關する法律) 개정¹⁶⁾을 통해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¹⁷⁾의 권고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규제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14)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15) 2024년 7월부터 시행

16) 2023년 6월부터 시행

1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상호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기준 이행을 감독하고 있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한 바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0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
- 2025년 10월 기준으로 총 23개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여 수리된 상황임.

[표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5. 10. 22. 기준)

연번	서비스명	법인명	연번	서비스명	법인명
1	업비트	두나무㈜	13	빗크몬	㈜골든퓨처스
2	빗썸	㈜빗썸	14	오아시스	㈜가디언홀딩스
3	코인원	㈜코인원	15	코다(KODA)	㈜한국디지털에셋
4	코빗	㈜코빗	16	케이닥(KDAC)	㈜한국디지털자산수탁
5	고팍스	㈜스트리미	17	오하이월렛	㈜월렛원
6	프라뱅	㈜프라뱅	18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7	비블록	㈜그레이브릿지	19	커스텔라	㈜마인드시프트
8	플라이빗	㈜한국디지털거래소	20	인피닛블록	㈜인피닛블록
9	BTX	차일들리㈜	21	DSRV	㈜디에스알브이랩스
10	코어닥스	㈜코어닥스	22	비덱스	비덱스 주식회사
11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23	로빗	㈜블로세이프
12	오케이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이후 2023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1단계 법률로서, 사업자 및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①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②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위원회¹⁸⁾의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필요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상장·공시제도 마련,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 주요 과제들을 선정·논의하여 202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¹⁹⁾.

□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의 디지털자산 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발행인의 자격, 준비자산 관리 및 상환의무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전통적 금융의 매개수단인 통화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참고로, 지난 2017년 정부가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디

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 1. 15.

지털자산(당시 가상통화) ICO²⁰⁾를 금지하기로 방침²¹⁾을 정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국내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발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의 자격 및 인가 등 진입규제,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상환의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받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맞는 유통과 관련한 별도 규율 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세 건의 제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절차와 발행절차, 준비자산의 관리, 거래지원,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추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 기존 디지털자산과 다른 특성에 근거한 유통 및 이용자 보호 제도 마련 요구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20)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투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의미함.

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2017. 9 .29.

- 참고로, 현재²²⁾ 동 제정안 3건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하여 디지털자산의 규제체계를 높이기 위한 제정안 4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표 2]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안 발의 현황(2025. 10. 기준)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2025. 6. 11.
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2025. 9. 22.
3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김재섭의원	2025. 9. 25.
4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운의원	2025. 10. 1.

- 다만, 세 건의 제정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안들과 같이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 건의 제정안은 현행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체계를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가치안정형 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를 법제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 결과 세 건의 제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에 대한 인가, 발행 및 유통절차, 준비자산의 확보·관리 및 상환의무,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거래 관련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²²⁾ 2025. 11. 20. 기준

-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화 논의가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제정안을 별도로 논의하거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화 논의 과정에서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차별성있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들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세 건의 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일반 디지털자산과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음.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세 건의 제정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은혜의원안은 총 5장에 걸친 30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됨.

-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및 신청·심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백서 제출, 신고 및 공시, 배상책임 및 상환의무,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재무건전성·경영건전성 기준 및 유지의무, 운영실패 시 처리 및 조치권한, 외국 발행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검사, 처분 권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 권한,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도결의원안은 총 7장에 걸친 41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됨.

-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행인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및 신청·심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백서 제출, 신고 및 공시, 상환의무,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은 내부통제 기준, 안전성 확보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이 사용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검사, 처분 권한, 긴급조치명령권, 과징금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및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7장은 벌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김현정의원안은 총 8장에 걸친 49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됨.

-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및 신청·심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제출, 신고 및 공시, 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은 상환의무,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은 건전성 유지의무, 안전성 확보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은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7장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검사, 처분 권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 거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8장은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정의

□ 제정안은 이 법에서 규율하려고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관련 용어들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김은혜의원안	안도결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그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5. “분산원장”이란 디지털자산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단일한 종류의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고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 및 이전될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단일한 종류의 법정 통화의 가치에 준거하여 해당 통화로 액면을 표시하여 발행될 것 다. 발행인에 의하여 나호의 액면에 해당하는 통화와의 상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자에 의해 시간 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마.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바.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분산원장”이란 디지털 자산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환이 보장될 것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산원장”이란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수 참여자에 의해 공동으로 기록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전산화된 장부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 제정안 제2조는 가치안정형 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면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정의는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이용하고 있음.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에서 교환될 수 없거나 기존의 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²³⁾하고 있음.

○ 김은혜의원안과 김현정의원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직접 준용하고 있고, 안도걸의원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에 관한 개념을 직접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 세 건의 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의 정의를 활용하되,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치안정형 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과는 다른 규제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별도의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른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²⁴⁾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은 지니어스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①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설계된 것으로, ②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적 가치로 교환·상환·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③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표시하거나 합리적 기대를 제시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유럽 MiCA에서도 전자화폐토큰을 ‘하나의 공식통화의 가치에 준거하고,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24) 스테이블 코인 정의에 대한 해외 입법례는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의

국 가	명 칭	정 의
EU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 하나의 공식통화의 가치에 준거하고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
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 그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적 가치(고정된 금전적 가치 상당액으로 표시된 디지털자산은 제외)로 교환, 상환, 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적 가치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거나 합리적인 기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 공식통화, 예금, 증권이 아닌 것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해외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제정안의 스테이블코인 정의 조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① 스테이블코인의 명칭, ② 연동 또는 준거되는 통화·자산의 종류, ③ 상환의무 및, 지급·결제 목적성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 제정안의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정의 비교

구분	김은혜의원안	안도결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명칭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연동·준거 대상 통화·자산	법정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 (대통령령 위임)	대한민국 또는 외국 단일 법정통화	대한민국 또는 외국 단일 법정통화 (액면 표시)
상환의무 명시	명시	- (단, 제정안의 다른 조항에서 상환의무 명시)	명시
지급·결제 목적성	-	명시	-

□ 먼저 스테이블코인 명칭과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안도걸의원안과 김현정의원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거래 과정에서 가치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 용어로 명명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통화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여 다른 디지털자산에 비해 가치의 안정성이 높은 측면이 있으나, 외국통화 또는 특정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환율 또는 해당 자산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국내거래소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동이 발생²⁵⁾할 수 있고,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수요·공급 쏠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치가 변동²⁶⁾될 가능성이 존재함.

□ 다음으로, 제정안에 따라 연동 또는 준거 대상 통화·자산이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① 법정통화 외의 자산 가치와 연동·준거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② 단일한 통화의 가치에만 연동되도록 제한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5) 지난 2025년 10월, 일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USDT 가격이 환율보다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음.

26) 지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Silicon Valley Bank) 파산 당시 동 은행에는 USDC 발행사인 씨클의 준비자산 33억 달러(전체 준비자산의 약 8%)가 예치되어 있었으며, 법정통화와 1:1로 교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의 여파로 USDC의 가치가 0.88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음.('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 10.' 참조)

- 김은혜의원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연동된 것으로 정의하여,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외의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복수의 법정화폐 또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안도걸의원안과 김현정의원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단일 법정통화’에 연동·준거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법정화폐 외의 자산에 연동되거나 여러 화폐 또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EU의 MiCA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asset-refernced token),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 그 외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과 달리 ‘자산준거토큰’은 복수의 법정화폐, 하나 또는 복수의 가상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조합의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함²⁷⁾.
-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해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7) 자본시장연구원,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의 주요내용’, 2022. 9.

□ 마지막으로, 세 건의 제정안 중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 상환의무를 명시²⁸⁾하지 않거나(안도걸의원안), 지급·결제 목적성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김은혜의원안, 김현정의원안)가 있으므로, 미국의 지니어스법 입법례를 감안하여 상환의무 및 지급·결제 목적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을 규정하고, ‘그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적 가치로 교환·상환·재매입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나. 분산원장의 정의

□ 세 건의 제정안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면서 ‘분산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²⁹⁾의 가상자산 개념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MiCA는 가상자산(crypto-asset)의 개념을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

28) 안도걸의원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규정에 상환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정안 내의 다른 조문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9)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또는 저장되는 가치 또는 권리를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분산원장'이라는 용어를 활용³⁰⁾한 입법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³¹⁾됨.

○ 최근 분산원장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입법례³²⁾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독일에서는 분산원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데이터가 기록되고 권한 없는 말소와 변경으로부터 데이터가 보호되는 기록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스위스에서는 ‘권리자가 발행인 도움 없이 법적 지위를 입증하고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다수 독립 참여자의 공동 관리와 같은 조치를 통해 무단 변경으로부터 무결성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할 때, 제정안의 분산원장 정의는 ① 디지털자산 등에 관한 정보, ② 시간순서, ③ 다수 참여자에 의한 공동 기재, ④ 공동

30) 다만,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에서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시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는 분산원장을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하며, 이 거래 정보는 분산·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32) 분산원장 정의에 대한 해외 입법례는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한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의 보호, ⑤ 장부 및 그 관리 체계 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분산원장의 사전적 정의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 제정안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업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또는 제7조).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제7조(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디지털자산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	제7조(인가 및 인가요건)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법령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대통령령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보안기준을 충족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나 외국 법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가치안정형 디지털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로 본다), 제1호나목의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이 충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본다. 이하 같다)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 9. 그 밖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 10.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의 인가 요건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 8.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③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자로 본다. ⑤ 제2항의 인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로 신고³³⁾제도를 두고 있으나, 발행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임.

○ 제정안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신설하여,

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세 건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업 인가 조건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행업 인가 대상으로는 세 건의 제정안 모두에서 국내 법인의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에 필요한 지점 또는 영업소(사무소)를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안도걸의원안은 외국 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김은혜의원안과 김현정의원안은 외국 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자기자본 요건으로는 공통적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력·전산·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 적격성³⁴⁾ 및 대주주 요건,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이해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상충 방지 체계 등의 요건도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표 5]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주요내용
■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국) 국내에 필요한 지점 또는 영업소(사무소)를 설치한 자 ※ 김은혜의원안·김현정의원안: 외국 법령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영업 영위 요건 포함 ■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김현정의원안, 안도걸의원안) ■ 발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 설비 ■ 발행 및 관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보안기준(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 임원 적격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주주 요건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강화된 이용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EU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발행업 인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거래목적으로 사용·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서, 법정화폐 등과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액면가로 상환할 의무가 요구됨.
- 지난 2017년 정부가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디지털자산(당시 가상통화) ICO³⁵⁾를 금지하기로 방침³⁶⁾을 정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국내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EU의 MiCA, 미국의 지니어스법의 경우에도 전자화폐토큰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은 각각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표 6]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국 가	명 칭	정 의
EU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 기존 금융법에 따라 인가된 신용기관(은행) 또는 전자화폐지침(EMD2)에 따른 전자화폐발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자
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미국에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 부보예금기관(IDI)의 자회사로 발행 허가를 받은 자 - 연방허가를 받은 발행인 - 주(州) 허가를 받은 발행인(발행 잔액 100억 달러 미만) ※ 비금융상장사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 재무부 장관·연준 의장·예보 위원장으로 구성

(자료: 금융위원회)

35)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투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의미함.

3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2017.9.29.

5.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 제정안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발행신고서 또는 백서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제9조(백서)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그 임원 및 핵심 인력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용도,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 3.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4. 발행 기반 기술 및 보안에 관	제14조(발행 신고)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새로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그 임원 및 핵심 인력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용도,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기반 기술 및 보안에 관한 정보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	제13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작성 및 공개)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목적, 용도, 기능 및 기술에 관한 정보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준거 통화에 관한 정보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한 정보 5.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 6. 발행 및 유통 구조에 관한 정보 7.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8. 상환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② 백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의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 6.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안정 구조에 관한 정보 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반 기술, 가치안정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동일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백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의 신고는	산의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에 관한 정보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기반이 되는 분산원장을 포함한 이전 등 거래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및 그 보안에 관한 정보 6. 준비자산의 구성 및 보관 방법에 관한 정보 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 방법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에 관한 정보 9.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준비자산 운용 방식 및 운용 수익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그 백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3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백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발행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백서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백서의 첨부서류, 신고, 변경신고	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발행신고”라 한다)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제10조(상품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상품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를 백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상품설명서에는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이용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및 철회신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품설명서 작성·공시)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상품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를 발행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품설명서에는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이용자의 디지털자산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이용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를 발행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이용자(이용하려는 자 포함)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품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정안은 발행인이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관한 발행신고서 또는 백서를 금융위원회에 신고·제출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른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발행인의 발행신고서(백서) 금융위원회 신고·제출, ② 금융위원회의 심사·수리 및 효력 발생, ③ 상품설명서 작성 및 공시 등으로 구성됨.

- 제정안별 세부적인 발행신고서(백서)의 기재 내용과 심사·수리절차 및 상품설명서 작성·공시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7] 제정안 별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절차

주요내용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명칭	■ 백서	■ 백서	■ 발행신고서
기재사항	■ 발행인에 관한 정보 ■ 용도, 목적, 기능에 관한 정보 ■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에 관한 정보 ■ 기반기술 및 보안에 관한 정보 ■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구성, 보관, 운용 방식 및 수익) ■ 상환에 관한 정보 ■ 이용자 보호장치에 관한 정보 ■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 가치안정 구조에 관한 정보(안도걸의원안) ■ 발행 준거 통화에 관한 정보(김현정의원안)		
심사·수리 절차 (효력발생)	-	■ 수리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 발생	■ 발행신고서에 거짓 기재, 중요사항 누락을 제외하고는 수리 거부 불가
상품설명서 작성·공시	■ 수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일반 공개	■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상품설명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공시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도·유통량에 관한 정보,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상환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발행신고서(백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일반 국민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앞서 설명한 대로 2017년 정부의 방침 이후 국내에서의 디지털자산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제정안에서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향후 국내에서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됨.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다른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과 달리 발행한도와 유통량, 준비자산,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이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화량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발행신고서(백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심사·수리를 통해 발행신고서(백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상품설명서를 일반에게 공개(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과 같이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한도 및 유통량을 적절히 통제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세 건의 제정안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과정에서 발행신고서(백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구체적인 수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거나(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수리(김현정의의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이 직접 통화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범용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실상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발행·유통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신고서를 심사·수리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조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금융위원회도 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재량이 적고 형식적인 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신고 방식으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수단으로서 앞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6. 상환의무 및 준비자산

가. 상환의무

□ 제정안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가 발행인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상환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제12조(상환 의무)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동된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제18조(상환의무 및 절차)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받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상환과 관	제25조(발행인의 상환의무)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발행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액면에 따른 발행 준거 통화로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청구를 받은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한 이용자에게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자산에 연동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상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상환청구 요건 및 절차 2. 가치가 연동된 법정통화 또는 자산별 상환금액 산정 기준 3. 상환 소요 기간 4. 상환 제한 사유 5. 상환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 부과기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련된 정책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상환청구 절차 2. 상환청구 요건 3.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환금액이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 4. 상환청구가 제한되는 사유 5.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있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상환청구권 및 상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먼저 상환 방식과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연동하는 자산을 법정통화뿐만 아니라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³⁷⁾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하면 발행인은 법정통화에 연동된 경우 액면가를, 자산에 연동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각각 상환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함.
- 반면, 단일한 종류의 법정통화에 연동·준거하도록 규정한 안도걸의원안과 김현정의원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상환대금(안도걸의원안) 또는 액면에 따른 발행준거 통화(김현정의원안)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상환 시기는 김은혜의원안과 김현정의원안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안도걸의원안은 3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상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은혜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발행인이 이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현정의원안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37) 김은혜의원안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정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그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표 8] 제정안 별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상환 절차

주요내용	김은혜의원안	안도결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상환방식	■ 법정통화 연동: 액면가 기준 ■ 자산 연동: 평가된 시가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환대금	■ 액면에 따른 발행준거 통화
상환시기 (청구일로부터)	■ 10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 1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규정)
상환 사항 공개	■ 발행인이 아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 ■ 상환청구 요건 및 절차 ■ 상환금액 산정기준(김은혜의원안) ■ 상환 소요 (예상)기간 ■ 상환제한사유 ■ 수수료 등 비용 부과 기준(김은혜의원안)	■ 발행인이 아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고 공개	■ 대통령령으로 위임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발행인이 법정통화 또는 특정 자산에 그 가치를 연동·준거하여 발행하게 되고, 해당 통화 또는 자산의 가치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보유자에게 상환할 것을 전제로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이 상환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EU의 MiCA, 미국의 지니어스법의 경우에도 전자화폐토큰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은 각각 연동·준거된 통화의 액면가대로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거나 발행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표 9]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국 가	명 칭	상환의무
EU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 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
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액면가 상환의무 명시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일반적으로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발행인과 보유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를 경유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환청구권과 상환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상자산거래소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하고,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고객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일반 고객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내 고객 계정에 기록되며, 개인지갑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와 같이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발행인과 보유자가 연결되는 방식이므로, 보유자가 실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 권한행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유자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법에 명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준비자산

□ 제정안은 발행인이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잔액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제13조(준비자산 구성 및 관리)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	제16조(준비자산의 구성 및 안전한 관리)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비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비자산 등의 확보) ①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준비자산은 발행 준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통화에 연동된 경우: 그 연동된 통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현금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다. 만기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국채 또는 외국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할 것 2.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미상환 잔액(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잔액에서 이 법에 따라 상환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 3. 상환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안전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할 것 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 통화로 표시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2.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집합투자상품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외국의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그 밖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③ 준비자산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2.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통화가 아닌 자산에 연동된 경우: 해당 자산 또는 국내 통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현금 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다. 만기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국채 또는 외국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4. 준비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할 것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준비자산을 상환의무 이행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따른 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준비자산의 별도관리 등) ①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준비자산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예탁 또는 보관 ②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준비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은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상환을 위한 준비자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행인이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는 금융기관에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매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는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표이사(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진술과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가치고정형 디지털	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매월 1회 이상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는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표이사(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진술과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분기별로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다. ⑤ 발행인은 이용자의 상황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준비자산의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준비자산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준비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준비자산의 공시 및 보고 의무) ① 발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털자산 발행인은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준비자산은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상환청구에 대한 상환 재원으로 우선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⑧ 준비자산은 상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한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준비자산을 상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준비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⑨ 준비자산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상환청구에 대한 상환 재원으로 우선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⑩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발행인이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잔액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준비자산의 구성, 보관, 검증 등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준비자산의 보유 규모 및 구성을 살펴보면, 세 건의 제정안 모두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발행인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자산의 구성은 일부 차이가 있음.
 - 세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금, 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또는 외국채를 준비자산 구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제정안에 따라 요구불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집합투자상품(김현정의원안), 연동된 자산(김은혜의원안) 등도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준비자산의 보관 방법과 관련하여, 세 건의 제정안은 모두 준비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분리 보관된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상계,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준비자산의 관리 방법과 관련하여, 세 건의 제정안은 모두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감사인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의 경우에는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공시할 때 대표이사의 진술과 서명을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0] 제정안 별 준비자산 보유, 구성, 관리 절차

주요내용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준비자산 보유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 ※ 단, 안도걸의원안은 발행잔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잔액		
준비자산 구성		■ (공통) 현금, 만기 1년 이내 국채·외국채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요구불예금 ■ 해당 연동 자산 (자산 연동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만 해당)	■ 요구불예금 ※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보유	■ 만기 3개월 이내의 집합투자상품
준비자산 보관방법		■ 준비자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 준비자산에 대한 상계,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 원칙적 금지	■ 예치 또는 신탁 방식	■ 예치, 신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보관 방식
준비자산 관리	대상	■ 준비자산 구성 및 현황	■ 준비자산 구성 및 현황	■ 준비자산 보고서
	작성 주기	■ 매월	■ 매월	■ 매월
	작성 방법	■ 기재사항이 진실·정확함을 인정하는 대표이사의 진술과 서명 포함	■ 기재사항이 진실·정확함을 인정하는 대표이사의 진술과 서명 포함	-
	검증	■ (주기) 분기 ■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등의 검토	■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발행인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환청구에 대응해 발행인이 적절히 상환할 수 있도록 발행규모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아울러, 준비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보유하도록 하고,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관 및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발행인이 적절하게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비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구성 및 현황을 매월 대표이사가 진실·정확함을 보증하여 공개하고, 분기별로 외부 감사인 등이 감사 또는 검토하는 제도를 둬으로써 발행인의 준비자산 보유·관리 현황에 대한 공적 감시 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EU의 MiCA, 미국의 지니어스법의 경우에도 전자화폐토큰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은 각각 미상환 스테이블코인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현금, 예수금,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1]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국 가	명 칭	준비자산 보유	준비자산 구성
EU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 미상환 EMT 상당액 100% 이상 유지	▪ 현금 최소 30%를 신용기관 내 별도계정 예치 ▪ 나머지는 저위험·고유동성 금융상품에 투자(준거 통화와 동일 통화)
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미상환 스테이블코인 잔액 대비 1:1 이상 유지	▪ 현금, 예수금, 만기 93일 이하 미국채, 만기 1일 이하 RP(국채 담보), 만기 1일 이하 역RP, 위 자산에 투자하는 MMF, 연방 감독당국이 승인한 고유동성 자산, 위 준비자산의 토큰화 자산

(자료: 금융위원회)

다. 예금보험공사의 상환자금 지원³⁸⁾

□ 김현정의원안은 단기간에 다수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발행인에게 일시적 상환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자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인에게 상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김현정의원안 제 29조).

김현정의원안
제29조(예금보험공사의 상환자금 지원) ① 단기간에 다수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환청구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발행인에게 일시적 상환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발행인이 제25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용자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이 준비자산 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인

38) 김현정의원안 관련 내용

김현정의원안

에게 상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상환자금 지원을 하기 전에 상환자금 지원 사실과 지원금액을 상환자금 지원 대상 발행인의 준비자산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준비자산 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별도관리하고 있는 준비자산 중 예금보험공사의 상환자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별도관리 준비자산에서 분리하여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에 대해서도 제2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으로 제1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금을 예금보험공사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게 상환자금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지원받은 발행인이 상환자금 지원금을 예금보험공사에게 반환한 경우,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반환금액에 상당하는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도관리 준비자산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⑥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 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납부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기타의 수입금으로 본다.
- ⑦ 제1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우선상환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되어,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예금보험기금이란 부보금융회사³⁹⁾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등의 재원으로 운용되며,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여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실금융회사⁴⁰⁾의 정리를 지원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김현정의원안은 단기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상환청구를 하여 발행인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인에게 상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고유동성 준비자산의 경우 제정안에 따른 상환청구일로부터의 상환기간(10일)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상환청구를 한 상황에서 적절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할 우려⁴¹⁾⁴²⁾가 있다는

39)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포함)임.

40)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41)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시 씨클(USDC 발행사)이 스테이블코인 발행대금으로 SVB에 예치한 자금이 전체 준비자산의 8%에 불과하였지만, 씨클이 보유하는 준비자산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생기자 시가총액의 18%인 78억 달러의 상환 요구가 몰린 사례가 있음.('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 10.' 참조)

42) 준비자산 구성항목 중 국채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용자가 준비자산 가치 또는 현금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일시에 많은 상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대해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유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임.

7. 거래지원

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 제정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지원을 하는 경우 적격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김은혜의원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간주하고, 김현정의원안은 등록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상환의무와 이를 위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일정 금액의 보호기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도걸의원안은 별도의 국내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적격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은혜의원안
제22조(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특례)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본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치고정형 가상자산 발행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발행하였을 것
2. 디지털자산이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발행되었을 것

김은혜의원안

3. 디지털자산이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김현정의의원안

- 제45조(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 ① 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인가 내지 등록을 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국가에서 발행된 외국통화표시 디지털자산(이를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등록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용자가 발행 준거 통화로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등록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시장 운영자 등의 사업자는 자신이 보관 중인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관 수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산정된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에 대한 보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보호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 및 활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도걸의원안

- 제19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시 의무와 책임)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하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 한다)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이하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라 한다)의 외국 법령에 따른 인가 등에 관한 정보
 2.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준비자산의 구성 및 보유 현황

안도결의원안
3.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방지 체계 구축 현황 4. 이용자 보호 방안 및 분쟁해결 절차 구축 여부 5. 외국 법령 위반 사실 존부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25년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거래지원)된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금액(시가총액)은 약 5,778억원, 거래규모는 2025년 6월 중 약 7조원 규모⁴³⁾임.
- 현행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 체계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별도로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상황임.
- 다만, 우리 위원회는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 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거래지원 관련 내부통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 이에 금융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43) 시가총액: USDT 5,571억원, USDC 207억원
 거래금액(6월 중): USDT 6조 9,179억원, USDC 2,206억원

공동협의체(DAXA)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을 마련하였으며,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모범사례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음.

-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거래지원 기준 등을 적용하여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2] 제정안에 따른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비교

구분	김은혜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등록 의무	-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에 등록 - 외국 법령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가 발행 -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발행 -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 보장 - 기타 금융위 고시 기준 충족	외국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인가·등록 후 발행	등록의무 미규정
거래 적격성 평가	-	국내·외국발행 모두 적격성 평가 대상	국내·외국발행 모두 적격성 평가 대상
상환 및 준비 자산	-	- 금융위에 등록한 경우 발행인은 상환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 부과 -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정 비율을 보호기금으로 적립	적격성 평가 시 외국발행의 경우 외국 법령에 따른 인가여부, 준비자산 구성·보유 현황 등을 고려

□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운 반면, 이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상환청구권, 준비자산 보유 및 발행인에 대한 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이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규제사례⁴⁴⁾를 살펴보면 미국, EU, 일본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내 유통을 허용하고 있음.

- EU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EU 역내에서 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비자산을 역내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별도의 발행인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해외 발행인이 해당 국가에서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등록해야 하며, 미국 내 준비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준비자산을 일본내에 보유하고,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⁴⁵⁾에게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44) 자본시장연구원,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이용자보호, 자본시장포커스 2025-18호 참조

45)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

□ 따라서, 세 건의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를 위한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② 발행인의 상환 의무 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일정 비율 보호기금 적립 의무 등의 사항을 도입할지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과 규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나.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⁴⁶⁾

□ 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⁴⁷⁾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도결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제19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시 의무와 책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는 국내에서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	제46조(가상자산시장 운영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 거래지원) ①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46) 안도결의원안, 김현정의원안 관련

47) 거래지원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기가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한 가상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참조)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의 적격요건에 대한 사항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디지털자산 정보의 공시 여부 및 정도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이 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량, 가치안정 구조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	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하 “준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준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이라고 한다)의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거래지원을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거래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거래지원을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상자산시장 운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의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가치안정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의 원문 또는 자료의 원문이 게재된 인터넷 주소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항에서 정한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내용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⑥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시된 사항을 정정하고 정정된 내용과 함께 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의 발행인에 의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의 가치안정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의 원문 또는 자료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공시를 하는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거래지원중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

안도결의원안	김현정의원안
⑦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는 별도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상황으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여부는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적용하여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 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① 발행주체의 신뢰성, ② 이용자 보호 장치, ③ 기술·보안, ④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 총 발행량, 분배 집중도,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이상 위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두 건의 제정안은 이러한 거래지원 관련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주기별로 재평가하여 거래지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하고 있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도결의원안은 이러한 공시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김현정의원안은 적격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유통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경우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앞서 살펴본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의 도입여부 및 수준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격성 평가 절차를 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 등 진입규제, 발행 과정에서의 발행신고서 작성 및 금융위원회의 심사·수리절차, 상품설명서의 공시 등의 규제가 적절하게 갖춰지

는 경우, 해당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적격성 및 적법성, 이용자 권익 침해 우려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적으로 평가되고 공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아울러,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를 위한 금융위원회 등록 및 준비자산 보유 등의 규제가 갖춰지고, 이러한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만 국내 유통이 허용될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별도의 적격성 및 적법성, 이용자 권익 침해 우려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실익이 낮을 수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래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사전적 규제 체계를 감안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적격성 평가 도입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8. 감독·조치 권한 및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

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권한 부여

□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료제출요구, 검사, 긴급조치명령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 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제25조(한국은행의 권한)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금융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발행인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등)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금융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자산의 발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해당 디지털 자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과 준비자산의 규모 2. 그 밖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한국은행의 권한)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영위하는 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 및 유통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책의 수립 및 외환시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책의 수립 및 외환시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이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 요청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7조(한국은행의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장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 및 유통량에 관한 사항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또는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제42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라고 한다)에게 이 법을 위반한 발행인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매매, 교환 또는 그 중개·알선·대행(이하 “거래지원”이라고 한다)의 종료 또는 임시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통화 가치에 준거하여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제1항에 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시장 운영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독·검사 및 조치명령 권한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⁴⁸⁾하고 있음.

- 이 중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8조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⁴⁹⁾하고 있음.

○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세 건의 제정안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감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외에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

4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털자산 발행인 등에 대하여 관련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과 관련하여, 세 건의 제정안 모두 한국은행이 발행인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김은혜의원안은 추가적으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량 및 준비자산 규모 등을 분기 별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검사 권한과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인이 영위하는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도걸의원안은 이러한 검사 요구 권한 외에도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음.

- 참고로,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⁵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 또는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⁵¹⁾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50) 「한국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51) 「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않고 있음.

○ 마지막으로, 안도결의원안은 금융위원회에게 발행인에 대한 긴급조치 명령권을 부여하면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김현정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또는 임시중단 조치 명령권을 부여하면서 한국은행이 외국 통화 준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도결의원안의 긴급조치명령권이란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발행인에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량 및 유통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김현정의원안의 거래지원 관련 조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의 종료 또는 임시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3] 제정안에 따른 권한 부여 내용 비교

구분	김은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한국은행 자료제출 요구권한	- 한국은행에 발행인에 대한 자료요구권 부여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 부여		
	발행량 기준 초과 시 발행인의 금융위·한국은행 보고 의무 부여	-	-
검사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발행인 영위 업무에 대한 검사 요청 권한 부여		-
	-	한국은행 직원의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 참여 요청 권한 부여	
긴급조치 명령 요청· 의견제시	-	- 금융위에 발행인에 대한 긴급조치명령권 부여 - 한국은행, 기재부에 긴급조치명령권 발동 요청 권한 부여	- 금융위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중지 명령권 부여 - 한국은행에 의견제시 권한 부여(외국 통화준거 한정)

□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기획재정부의 외환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에 자료제출 권한,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⁵²⁾가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자산 매입·매각으로 인한 단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상승·하락 압력이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⁵³⁾임.

5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6. 1. 2.부터 외환정책 등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 소관이 될 예정임.

53)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2025. 10.’ 참조

- 아울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 시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 참고로,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788)⁵⁴⁾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의 내용 중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차관은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원회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청권한은 발행량이 일정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4)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⁵⁵⁾

- 안도결의원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중 통화 및 외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려는 것임.

안도결의원안
제35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중 통화 및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 차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중 외환 및 통화 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량 및 유통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준비자산 구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5) 안도결의원안 관련

안도결의원안

-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⑨ 기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도결의원안에 따른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됨.

○ 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량 및 유통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안도결의원안은 앞선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외환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관계기관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협의·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⁵⁶⁾하고 있음.

⁵⁶⁾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⁵⁷⁾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및 가상자산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다만, 안도결의원안의 위원회 구성 위원들은 모두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가상자산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⁵⁸⁾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은 당연직 위원에 해당함.
- 따라서 안도걸의원안과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 중 일부 당연직 위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협의기구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고, 이 곳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존중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금융위원회는 법률상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참고자료】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입법례(EU·美)

구분	EU (MiCA)	美 (GENIUS Act)
명칭	■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EMT)	■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발행인 자격	■ 기존 금융법에 따라 인가된 신용기관(은행) 또는 전자화폐지침(EMD2, 전금법 유사)에 따른 전자화폐발행기관 으로 인가를 받은 자	■ 미국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 부보예금기관(IDI)의 자회사로 발행 허가를 받은 자 - 연방허가를 받은 발행인 - 주(州) 허가를 받은 발행인 (발행 잔액 100억 달러 미만) ※ 비금융상장사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 위원회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 재무부 장관·연준 의장·예보 위원장으로 구성
건전성 규제	■ 전자화폐 지침에서 정하는 자본금규제 적용 - (최초 자본금) 35만 유로	■ 자본금 유지, 유동성, 위험관리 의무(감독기관을 통한 규정 구체화)
준비자산 관리	■ 미상환 EMT 상당액 100% 이상 유지	■ 미상환 스테이블코인 잔액 대비 1:1 이상 유지
준비자산 구성	■ 현금 최소 30%를 신용기관 내 별도계정 예치 ■ 나머지는 저위험·고유동성 금융 상품에 투자(준거 통화와 동일 통화)	■ 현금, 예수금, 만기 93일 이하 미국채, 만기 1일 이하 RP(국채 담보), 만기 1일 이하 역RP, 위 자산에 투자하는 MMF, 연방 감독당국이 승인한 고유동성 자산, 위 준비자산의 토큰화 자산
상환의무	■ 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	■ 액면가 상환의무 명시
이자 지급	■ 발행인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자 지급 금지	■ 발행인의 이자 지급 금지
해외 발행	■ EU 내 법인 설치·인가 필요 ■ 인가된 경우에만 유통	■ 미국 내 발행 희망시 인가 필요 ■ 미국 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한 경우 유통 가능
운영 실패시 이용자 보호절차	■ 복구·상환계획 수립 후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당국 통지 ■ 당국은 복구계획 실행 요구 및 상환 중단 명령 권한 보유	■ 준비자산은 파산재산에서 제외되며, 법원은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14일 내 상환 명령 가능

문 의 처
02)6788-5106